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1가단530107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이호진, 한연규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9,220,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22. 3. 1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1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2. 기재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2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0,086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9,220,086원 및 이에 대해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20. 9. 28. 보증금액 1,900만 원, 보증기한 2025. 9. 26.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가 2021. 5. 27.부터 이자납부를 연체하여 2021. 6. 28. 보증부실 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C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1. 9. 7. 이 사건 대출원리금 19,220,0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0조)'고 정하고 있 고, 위 대위변제 당시 원고가 정하는 율은

연 8%이다.

라. (1) 별지1 목록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은 2018. 2.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2021. 3. 15. 매매(이하, '이 사건 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9,500만원)가 마쳐졌고, 별지1 목록 2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은 2020. 6.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2021. 3. 29.

매매(이하, '이 사건 2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억 700만 원)가 마쳐진데 이어 2021. 11. 29. 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21. 12. 7.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2021. 12. 7.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8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C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에서 111,350,000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된 후 2022. 11. 24. H자산관리회사에 42,988,031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천단양지사에 482,090원, 피고 B에 65,240,485원(3순위 소유자 잉여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별지2 기재와 같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다.

마. 이 사건 1매매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366,231,100원{= 이 사건 1부동산 156,249,000원 + 원주시 I 대 129㎡ 19,982,100원 + 이 사건 2부동산 107,000,000원 + 원주시 J건물 K호 83,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412,054,940원(= C은행 62,462,455원 + L조합 5,106,386원 + M 54,363,797원 + C은행 39,947,565원 + N 65,000,000원 + C은행 20,000,000원 + O 5,089,298원 + P 7,272,307원 + Q 8,918,689원 + C은행(원주여신) 9,969,203원 + 강원신용보증재단 59,133,933원 + R 7,582,307원 + S 43,609,000원 + T 33,6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2매매 당시 적극재산으로 209,982,100원(= 원주시 I 대 129㎡ 19,982,100원 + 이 사건 2부동산 107,000,000원 + 원주시 J건물 K호 83,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U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위 가. 내지 다.항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9,220,08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3. 10.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어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아직 보증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가 C은행에 대한 이자를 2021. 2. 25.부터 연체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 및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 V이 2021. 5. 27.부터 이 사건 대출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증인인 원고가 2021. 9. 7.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F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자금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되 등기만 피고 A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F와 피고 A 간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약정 하에 F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을 받아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유권은 피고 A가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가 무자력에 이른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등

(1)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C은행의 선행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고 B에게 소유자 잉여금으로 65,240,485원이 배당되어 공탁되었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2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D조합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별지2 기재 배당금 채권을 채무자인 피고 V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고, 이 사건 2매매를 이 사건 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억 700만 원 보다 적은 원고의 채권액 19,220,086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별지